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견

의안 번호	122
----------	-----

제출년월일 : 1997. 4. 30.
제 출 자 : 박정자 의원의 6인

1. 주 문

- (1) 감사위원 : 영등포구의회 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2인
- (2) 선임방법
 - 가. 의장이 추천하는 결산검사위원 3인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
 - 나. 선임된 감사위원 대표자는 의원중 연장자로 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은 우리구 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의원 1인 및 공인회계사 2인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함.

3. 관련법규

-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民願調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

의안 번호	131
----------	-----

발의년월일 : 1997. 7. 14.
발 의 의 원 : 배기한 의원의 10인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민에게 의혹을 주고 있는 민원사항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조사하여 영등포구청의 신뢰회복과 구민의 민원 및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음.

2. 주요골자

영포건설 집단민원사항, 복지시설 하자 및 보수민원사항, 재무행정의 입찰관련 민원사항, 장기미준공 건축물과 관련된 민원사항.

民願調査計劃書

=====

1. 조사의 목적

의원의 의정활동중 풀리지 않고 구민의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는 각종 민원사항중 특히 재무행정분야의 수의계약과 관련된 민원사항과 영포건설과 관련된 민원사항, 장기미준공 건축물과 관련된 민원사항, 복지시설 하자 및 보수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 제도나 시행상의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이 갖고 있는 의혹이 가는 부분을 해소하여 주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음.

2. 조사사안의 범위

집행기관에서 이루어진 재무과의 공사계약과 관련된 분야 및 영포건설과 관련된 도시정비과, 주택과의 해당 업무 전반과 건축과 업무중 미준공 건축물과 관련된 업무전반 복지시설 하자 및 보수와 관련된 민원사항.

3. 조사방법

- 조사와 관련된 집행기관 책임자의 조사사항에 대한 보고청취 및 서류제출
- 증인이나 참고인의 출석요구, 증언청취.
- 관계 공무원의 출석 질의답변.
- 현장확인

4. 조사위원회의 편성

- 위 원 장 : 1명
- 간 사 : 1명
- 위 원 : 7명
- 사무보조원 : 1명

5. 조사기간

1997년 8월 1일(금) ~ 11월 20일

※ 지방자치법 제36조 ④에 의한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는 본 계획서에 의거 기 요구한 것으로 하며, 조사일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調 査 日 程

일 시	조사대상기관	장 소	조 사 사 항
		제1소회의실	· 위원장 및 간사선출 · 조사계획서 작성 의결 ※ 본회의 조사계획서에 의결 · 조사요구서류 목적작성 집행기관 제출요구
	재 무 과	제1소회의실	· 조사대상 업무현황 보고청취 ※ 질의는 일정에 별도 있음. 질의사항만 준비
			·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서류검토 ※ 의문사항 기록, 질의준비
			· 질의답변 증인채택 여부결정
	주 택 과 도 시 정 비 과	제1소회의실	조사사항은 재무과와 동일함.
	건 축 과	제1소회의실	조사사항은 재무과와 동일함.
	사 회 복 지 과 가 정 복 지 과	제1소회의실	조사사항은 재무과와 동일함.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調査結果報告書

=====

○ 수 신 : 조사특별위원장

조사대상업무명	현행제도및문제점	조사대상업무의 개선요구사항	조사대상업무중법규의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

1997 년 월 일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인)